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5월 21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5월 26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6월 4일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

나.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4.12.30. 공포, ‘15.7.1. 시행) 제정으로 “복지통장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통·리장 임무에 복지임무를 부여하여 주민의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예방적 복지실현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통·리장의 복지임무 부여(안 제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수정.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규제개혁T/F팀, 청렴정책팀과 합의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백 인 업

○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통·리장의 복지임무를 부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서 통·리장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보장 사업추진 지원의 복지임무를 부여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수정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통·리장의 복지임무를 부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